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9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, 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, 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 및 반환 규정 신설 (안 제51조 ~ 제55조)
- 나. 내용에 맞게 조항 재배치 (안 제56조)
- 다. 불필요한 조항 삭제: 조례 제52조(시행규칙)
- 라. 조문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규정
 - <별표 1> 사용료 징수 범위 (제53조 관련)
 - <별표 2> 사용료 등 감면 (제54조 관련)
 - <별표 3> 수강료 반환기준 (제55조제2항 관련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 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31조
(여성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[별표 8] 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제1항 제3호(여성발전센터) 관련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4. 20. ~ 2023. 5. 10.

2) 경제진흥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: 원안 동의

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5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6) 조례·규칙심의회 회의 결과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를 제56조로 하고,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(시설 사용허가)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영리 또는 정치·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
2.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2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) 구청장은 제 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·중지할 수 있다.

1.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
3.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(사용료) ① 제51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4조(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7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
8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9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
10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
제55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

료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%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.

2.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.

②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
2.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별표1,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<별표1>

사용료 징수 범위(제53조 관련)

구 분	단 위	기준금액	부 과 기 준
세미나실	1시간	25,000원	○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○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○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일반강의실 I	1시간	20,000원	
일반강의실 II	1시간	15,000원	
일반강의실 III	1시간	10,000원	

<별표2>

사용료 등 감면 (제54조 관련)

대 상	감면비율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	면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-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	50%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	20%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	30%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	10%	

<별표3>

수강료 반환기준 (제55조제2항 관련)
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제55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가.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수강료 전액
	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가기 전	수강료의 2/3 해당액
	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가기 전	수강료의 1/2 해당액
	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나.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수강료 전액	
	수업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	
비고		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51조(시설 사용허가)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리 또는 정치·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.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.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<p><신 설></p>	<p>제52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) 구청장은 제 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·중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

<신 설>

<신 설>

경우

3.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
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

제53조(사용료) ① 제51조의 사용
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
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
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
다.

제54조(사용료 등의 감면·할인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
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
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
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
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
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사
회복지시설의 수용자
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
저소득 한부모가족
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

<신 설>

애인

7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
급여 수급자
8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
다문화가족
9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
원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
드소지자
10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
요하다고 판단될 때

제55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납부
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
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단,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
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
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
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,
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
한 경우에는 위약금 10% 공제
후 잔액을 반환한다.
2.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센터의
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
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
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
한다.

②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

제51조 (생략)

제5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
정지된 경우
 2.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
된 경우
 3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
을 포기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
생한 경우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
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
환할 수 있다.

제56조 (현행 제51조와 같음)

<삭제>

<신 설>

별표1,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

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<별표1>

사용료 징수 범위(제53조 관련)

구 분	단 위	기준금액	부 과 기 준
세미 나실	1시간	25,000 원	○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
일반 강의실 I	1시간	20,000 원	○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
일반 강의실 II	1시간	15,000 원	○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일반 강의실 III	1시간	10,000 원	

<별표2> 사용료 등 감면
(제54조 관련)

대 상	감면 비율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	면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- 구에서 발행한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	50%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	20%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에서 발행한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	30%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에서 발행한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	10%	

<별표3> 수강료 반환기준

(제55조제2항 관련)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제 5 5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 른 반 환 사 유 의 경 우	수업시작 전	수강료 전액
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가기 전	수강료의 2/3 해당액
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가기 전	수강료의 1/2 해당액
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 환 하 지 아니함
	수업시작 전	수강료 전액
	수업시작 후	반 환 사 유 가 발생 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 출 된 수 강 료 를 말 한 다) 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	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이 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방은영
연락처	02-3153-8923